

[] 건축사 자격시험				응시원서		증명사진 (3.5cm×4.5cm) (3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)
[]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						
※ 응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생년월일과 국적을 적습니다.						
성명			주민등록 번호			
주소						(전화: - -) (휴대전화: - -)
학력	학교 과 년 월 일 (졸업, 수료)					
응시지역			[]서울 []부산 []대구 []광주 []대전			
응시과목			[]대지계획 []건축설계1 []건축설계2			
위와 같이 [] 건축사 자격시험 []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. 년 월 일						
응시자						(서명 또는 인)

건축사협회 회장 귀하

응시번호		접수번호	
------	--	------	--

		(절)			(취)			(선)		
응시번호	[] 건축사 자격시험				응시표		증명사진 3.5cm×4.5cm (3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)			
[]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										
성명			주민등록번호							
응시지역	[]서울 []부산 []대구 []광주 []대전									
응시과목	[]대지계획 []건축설계1 []건축설계2									
년 월 일										

건축사협회 회장

● 응시자 주의사항

- 응시 자격은 시험 전날까지 갖추어야 하며, 응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응시할 경우 시험은 무효로 처리됩니다.
- 응시자는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, 시험이 시작된 후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.
-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(운전면허증 등 국가인정증명서를 포함합니다)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.
[다만, 응시표를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사진 1장, 주민등록증(운전면허증 등 국가인정증명서를 포함합니다)을 소지하고 시험 시행 당일 시험시행본부에서 응시표를 재발급받아야 합니다]
- 답안지, 답안 작성 보조용지(트레이싱지) 및 깎판용지는 시험시행본부에서 배부하며, 책상, 제도대 등은 일절 시험실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.
- 시험장에는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며, 공식적인 시험시간 관리는 시험 시작 신호와 시험 종료 신호로 이루어집니다.
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시기 바라며, 휴대용 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를 시계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(휴대전화 무단 열람 시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).
- 일반 계산기가 아닌 공학용 전자계산기는 반드시 리셋을 한 후 사용 가능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- 응시원서의 기재 오기·누락 및 연락 불능의 경우와 시험답안지의 기재 착오·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, 시험답안지는 일절 열람·확인할 수 없습니다.
- 부정행위자는 「건축사법」 제15조의2에 따라 시험을 무효로 하며, 해당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할 수 없습니다.